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2005. 12. 1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5년 11월 17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18회(정례회) 제3차 위원회(2005년 12월 5일)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제 정 근)

가. 제안 이유

- 옥외광고물등 관리법(2004.12.23) 및 같은법 시행령(2005.6.23)이 개정되어 시·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미관 향상 등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자치구로 위임된 서울시 조례를 인용한 사항
 - 제2조(허가신고의 첨부서류)
 - 제3조(신고필증 교부 갈음)
 - 제6조(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)
 - 제7조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)
 - 제8조(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)
 - 제9조(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)
 - 제10조(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
 - 제11조(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)
 - 제12조(애드벌룬의 표시방법)
 - 제13조(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
 - 제14조(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
 - 제15조(새로형간판의 표시방법)

- 제16조(공면간판의 표시방법)
- 제17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
- 제18조(현수막 지정재시대의 설치 관리기준 등)
- 제19조(벽보의 표시방법)
- 제21조(전단의 배부방법)
- 제22조(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)
- 제23조(표시방법의 완화)
- 제24조(위원회의 구성)
- 제25조(위원회의 기능 등)
- 제27조(안전도검사)
- 제28조(안전도검사업무 위탁)
- 제29조(채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)
- 제37조(시행규칙)
- 인접구(양원구, 구로구, 강서구)의 합의안 또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추가된 사항
 - 제6조의4항(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)
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민원인에게 종료사항과 연장절차를 통보
 - 제7조의6호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)
화재예방을 위하여 "가로등 자동 점멸기함" 표시금지대상에 포함
 - 제14조의1항2,4호(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
 - 창문면적의 1/2 이내로 광고물을 설치하되 최대0.6㎡을 0.8㎡로, 업소당 표시 면면적을 3㎡을 4㎡로,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을 20cm에서 25cm로 규정완화
 -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이 25cm이하인 광고물은 광고물 총 수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완화
 - 제19조의2항(벽보의 표시방법)
지정벽보판설치 및 관리사항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규격 및 사용기간 등을 규정
 - 제24조2항(위원회의 구성)
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.
- 신설된 사항
 - 제4조(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)
허가신고물 수리한 내용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상으로 같음

- 제5조(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등)
게시시설 또는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를 분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
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경우도 분리신청 명시
- 제20조(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)
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능력이 있는 단체·법인 등에게 위탁관리
- 제26조(위원회 심의사항)
대심의 사항을 명시
- 제30조(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)
불법 광고물 제거 등 필요 조치후 행정 대집행법등의 규정에 따른 조
치 및 소송비용 징수사항
- 제31조(옥외광고업의 신고)
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대장 등을 전산관리조치
- 제32조(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교육)
옥외 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사항등을 규정
- 제33조(교육의 위탁)
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항등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
- 제34조(수수료)
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, 안전도검사, 옥외광고업자의 신고, 수수료 등
을 규정
- 제35조(과태료의 부과징수)
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
- 제36조(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)
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이 남 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(2004.12.23) 및 같은법 시행령
(2005.6.23)이 개정되어 시·도의 권한 일체가 자치구로 이양됨으로서 서울
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2005.12.31자로 폐지되고 2006.1.1부터는
자치구 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여 전면
개정하려는 것으로,
- 그 배경은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권역으로서 그 동안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
여 관리되어 왔으나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조례에 의하여 적용시 혼란이 야기
될 우려가 있으며 인접구간의 형평 유지 및 민원발생예방 등 통일성을 기하기
위한 것으로

○ 조례내용을 살펴보면.

- 안제1조(목적)
- 안제2조(허가신고의 첨부서류)
- 안제3조내지 제4조(신고필증 교부 및 허가·신고사항의 기록관리)
- 안제5조(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허가·신고)
- 안제6조(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)
- 안제7조내지 제8조(광고물등의 표시금지물건 및 제한)
- 안제9조(연립간판의허가·신고 및 표시방법)
- 안제10조(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
- 안제11조(옥상간판의 표시방법)
- 안제12조(에드빌등의 표시방법)
- 안제13조(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
- 안제14조(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
- 안제15조내지 제19조(새로형간판·공연간판·현수막·벽보의 표시방법)
- 안제20조(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위탁)
- 안제21조(전단의 배부방법)
- 안제22조(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)
- 안제23조(표시방법의 완화)
- 안제24조내지 제26조(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
- 안제27조내지 제28조(안전도검사 및 위탁)
- 안제29조(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)
- 안제30조(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)
- 안제31조(옥외광고업신고)
- 안제32조내지 제33조(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)
- 안제34조(수수료)
- 안제35조(과태료 부과·징수)
- 안제36조(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)
- 안제37조(시행규칙)로 구성되어 있으며

○ 금번 조례개정시 신설(추가)한 내용으로는

- 안제7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“가로등 자동점멸기함”을 신설(추가)
- 안제19조에 “지정 벽보판의 설치관리 기준”을 신설(추가)
- 안제20조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“위탁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안제24조에 “광고물 관리 심의위원을 3인 이상 9인이하”로 하였고
- 안제26조에 “위원회의 심의사항”을 신설(추가)하였습니다.

○ 완화된 내용으로는

- 안 제14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

- 출입문 또는 창문면적의 각 1/2이내로 하되, "최대 0.6m" 을 "0.8m" 로
- 업소당 표시면적은 "3m" 을 "4m" 로
- 광고물 총수산점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광고물 크기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"20cm이하" 을 "25cm이하" 로 다소 완화. 이는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